

핵,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제재: 최근 미국내 관련 법규 개요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김현철(hyunchulkim@korea.com)

※ 이 글은 Dainne E. Rennack, Nuclear, Biological, Chemical and Missile Proliferation Sanctions: Selected Current Law(미국 Report for Congress, 2003년 1월 24일자)을 번역한 것임.

< 요약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1) 18 U.S.C(형사소송절차 관련) (*Legislation on Foreign Relations Through 2000*, Vol. II, 페이지 880 참조)

* 18 U.S.C 229-229F (part I, ch.11)에 의하면 개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시 불법으로 여겨져서, 민형사 형벌 및 벌금 내지 자격상실 등의 처벌을 받게됨.

-i) 화학무기의 발전, 생산, 획득, 직·간접적 이전, 공급, 저장, 보유 내지 소유, 사용 및 사용 위협시. ii) 위 1항을 위반한 사람을 지원 내지 소개하거나, 위 1항을 위반하려고 시도 내지 공모할 경우.

1998년 화학무기협약 실행법(Cheical Weapons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98)의 201절에 따라, 위 규정들은 미국내 민형사 형벌을 화학무기협정의 요구조건에 맞추도록 입법화됨.

* 18 U.S.C 2332a항에 의하면, 미국민을 향해 또는 미국내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시도내지 공모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

됨.

2)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개정된 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타국에 무기의 판매, 대여, 허가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수출용 무기판매의 허가 등에 관련된 승인권한을 갖게 됨.

* 3(f) (Eligibility; 22 U.S.C. 2753(f))에 의하면, 핵 폭발장치(nuclear explosive devices)와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특수한 핵물질들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미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들<확산 위험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군사 판매 내지 대여를 금지함.

* 38절의 무기의 수출입 통제조항(Section 38, Control of Arms Exports and Imports; 22 U.S.C. 2778)에 의하면, 미 대통령은 i)방위 물자와 서비스의 수출입을 통제하며, ii)미국의 수출입업자들에게 외교정책상의 지침을 제공하며, iii) 방위 물자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미국의 군수품리스트(Munitions List)를 공표할 권한을 승인받음.

그리고 위 38절(e)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위 조항의 위반자들에게 민사상 형벌을 부과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음.

* 40절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조항(Section 40, Transactions With Countries Supporting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22 U.S.C. 2780)에 의하면, 국제 테러리즘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온 정부(governments)가 속한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거래를 금지함.

- i) 군수품의 수출 또는 제공, ii) 군수품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의 제공, iii) 이런 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의 부여 또는 면허 발급, iv) 이들 국가의 군수품 획득을 촉진하는 행위 등.

- 이 때 ‘국제테러리즘의 행위(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의 개념 규정시 미 국무장관이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함. 즉 i)개인 또는 집단에 핵폭발장치의 국제적 확산을 의도적으로 지원내지 부추김, ii) 개인 또는 집단이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특수한 핵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원내지 부추김, iii) 개인 또는 집단이 생화학 또는 방사능 무기를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내지 획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원 내지 부추김.

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미 국무장관의 결정을 취소 내지 무효로 할 경우, 사전에 미 하원 대변인과 미 상원 외무위원회 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즉 결정의 취소이전에 i)의심받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와 정책들이 변경되었으며, ii) 해당 국가의 정부가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지 않으며, iii) 향후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보장하였음을 통고하여야 함.

미 의회는 미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를 상하 양원의 공동 결의안에 의해 저지할 수 있음. 그렇지만, 미 대통령은 위 규정에 따른 금지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으로 철회(내지 보류)할 수 있음. 미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상의 이해관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미 의회에 보고해야함.

* 72, 73절 미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미사일 장비 또는 기술의 이전 거부 규정(Section 72 & 73, Denial of the Transfer of Missile Equipment or Technology by U.S. Persons; 22 U.S.C. 2797a; Transfer of Missile Equipment or Technology by Foreign Persons; 2797b)에 의하면, 미 대통령이 보기에 다음 사항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함.

- MTCR 지지국가(MTCR adherent)가 아닌 국가에서의 미사일의 획득, 디자인, 개발 또는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레짐(MTCR)에 의해 명시된 장비 내지 기술을 수출, 이전, 수출 또는 이전의 공모, 수출 또는 이전의 촉진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함.

- 제재의 규모와 정도는 수출된 장비 또는 기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됨. 최악의 경우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 2년 기간에 걸쳐 부과되며, 여기에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 거부, 미국 군수품리스트상의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의 취소, 그리고 미국내에 수입 금지 조치가 포함됨.

- 미 대통령은 위 규정에 의해 제재가 가해졌던 미국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이들 개인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가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로 의회에 통고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내지 보류)할 수 있음.

* 73B절 MTCR 지지국에 관련된 권한 (Section 73B, Authority Relating to MTCR Adherent; 22 U.S.C. 2797b-2)에 의하면, 미 대통령은 외국인에 대해, 그가 MTCR 지지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거나 그가 수출하는 품목의 최종 사용자가 MTCR 지지국임에 상관없이, 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경우, 위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짐.

- i)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미국과의 양해각서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ii) 그 국가가 MTCR 지지국가가 아닌 나라에 미사일의 획득, 디자인, 개발 및 생산에 기여하는 통제된 품목을 수출하는데 그 책임이 있어서 미국이 그 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임.

* 81절 생화학무기와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제재조항(Section 81, (CBW) Sanctions Against Foreign Persons; 22 U.S.C. 2798)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품을 통하거나 다른 거래방식을 통해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또는 획득하기 위한 외국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정부조달, 미국정부와의 계약체결 또는 수입을 거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이후 미 대통령은 제재를 가하는 개인이 속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정부가 제재 대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한 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제재의 부과를 180일까지 보류 내지 연기할 수 있음.

- 미 대통령은 제재를 받은 개인이 특정 외국 정부, 또는 단체가 생물 또는 화학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지원하지도 부추기지도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이 사실을 미 의회에 통고할 경우에는, 12개월이후 제재를 종결할 수 있음.

* 101절 핵농축의 이전에 대한 제재조항(Section 101, Nuclear Enrichment Transfer; 22 U.S.C. 2799aa)에 의하면, 미국은 특정 국가가 핵 농축에 관련된 장비, 물질, 또는 기술을 건네주거나 전달받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국가에 대해 해외 경제 또는 군사원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102절 핵 재처리의 이전, 핵폭발장치의 불법 수출, 핵폭발 장치 및 기폭장치의 이전에 관련된 제재 조항(Section 102, Nuclear Reprocessing Transfer, Illegal Exports for Nuclear Explosive Devices, Transfers of Nuclear Explosive Devices, and Nuclear Detonations; 22 U.S.C. 2799aa-1)에 의하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해외 경제 또는 군사원조를 금지함.

- 핵 재처리에 관련된 장비, 물질, 또는 기술을 제3국으로부터 전달받거나 또는 이전하는 경우

-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 확산에 기여하는 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자국소속 대리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 위 규정에 의하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원조(인도적 또는 식량원조 제외), 무기판매, 미군수품리스트 품목의 수출허가, 외교정책상의 필요에 기인한 수출허가, 다양한 차관 및 대부 제공을 금지함.

: i)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폭발장치를 이전한 경우,

ii)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폭발장치를 전달받거나, 핵폭발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

iii)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폭발장치의 개발 또는 제조에 관련된 정보 또는 구성물품을 이전하는데 관여한 경우

iv)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폭발장치의 개발 또는 제조에 관련된 정보 또는 구성물품을 이전받는 경우.

3) 1954년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of 1954)

1954년 원자력법은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 사용 및 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공표한 것임. 위 법안에 따라 핵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미 국무성이 협상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한 핵물질 및 핵기술의 수출을 감독할 권한을 승인 받음. 위 법안에는 핵 물질과 민감한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 기준이 명시됨.

* 129절 핵수출의 종결을 위한 행동 규정(Section 129, Conduct Resulting in Termination of Nuclear Exports; 42 U.S.C. 2158)에 의하면, 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핵무기 비보유 국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핵 물질, 장비, 민감한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함.

- i) 핵폭발장치를 폭발시켰거나, ii)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종결 또는 파기한 경우, iii) 명백히 IAEA 안전협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iv) 핵폭발장치의 제조 내지 획득에 관여한 경우.

- 그리고 위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국가, 그룹에 대해 이전을 금지함

: i) 미국과의 핵 협력협정을 위반하거나, ii) 핵무기 비보유국가로 하여금 핵폭발장치에 관련된 특정 행위에 관여하도록 지원, 격려 또는 유도한 경우, iii)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 재처리 장비, 물질 및 기술을 이전하는데 동의한 경우 등.

- 미 대통령은 위 규정에 따른 제재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장애가 되거나 미국과의 공동 방위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이러한 제재를 철회할 수 있음.

4)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ontrol and Warfare Elimination Act of 1991)

- 위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국가들에 대하여 미국내 제재 조항을 위임하고 있으며, 국제적 제재를 권고함.

* 307절 화학 또는 생물 무기의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Section 307, Sanctions Against Use of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22 U.S.C. 5605)에 의하면, 화학 또는 생물 무기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준비를 갖춘 외국 정부에 대해 미 대통령이 해외원조(인도적, 식량 및

농업상 지원 제외), 무기판매 및 허가, 차관 제공 및 보증, 그리고 특정 품목의 수출을 종결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제재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로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의 진전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대통령에 의해 결정될 경우, 위의 제재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확대되는데 영향을 끼침. 즉 다자간 개발은행의 대부, 미국 은행의 대부 및 차관, 해당국가와 미국간의 수출입, 외교관계 및 미국에 대한 항공상의 접근들에 대한 제재로 확대됨.

5) 1998년 화학무기협약 실행법 (Chemical Weapons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98)

- 위 법안은 미국이 1993년 1월 13일 서명하고 97년 4월 29일에 회원국이 된 화학무기 협약(Cheical Weapons Conventions)을 실행하기 위해 입법화됨.

* 103절 미국의 민사상 책임에 관한 규정(Section 103, Civil Liability of Unites States; 22 U.S.C. 6713)에 의하면, 화학무기 금지 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에 가입하거나 회원인 외국인, 외국계 기업 및 그 직원 등이 화학무기협약에 의해 승인받지 않는 형태로 이에 관련된 미국의 상업상의 비밀 정보를 공표, 누설하거나 또는 미국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에 10년동안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규정함.

i) 무기 수출거래의 금지- 미국 군수품 리스트상의 품목의 판매, 무기수출통제법하에서의 거래의 금지; 1979년 수출관리법 하에서 외교정책상 통제를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가의 취소

ii)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함.

iii) 미국 수출입은행과의 거래 불허

iv) 제재를 받는 개인에 대해 미국의 민간 은행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v) 대통령령에 의해 미국내 자산 동결 조치

vi) 미국내에 항공기로 착륙할 권리를 불허함.

- 미 국무장관은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회원인 특정 개인이 미국의 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그에 대한 미국 비자를 거부하도록 규정됨.

- 미 대통령은 위와 비슷하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외국정부에 대해 5년간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됨

: 경제원조(인도적 지원이외의), 군사원조, 해외 군사 금융지원, 군사교육 및 훈련의 제공, 군사차관 및 보증 등을 금지함. 그리고 상업용 위성에 대한 수출 허가를 거부함.

6)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

- 위 법에 의해 미국 행정부서는 타국에 대한 민간 부분의 특정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게 됨. 수출관리법(EAA)은 비확산을 포함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상의 고려를 반영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조정하며, 수출품을 공급받는 자들의 적격여부를 결정함.

* 5절 국가안보상의 통제(Section 5, National Security Controls; 50 U.S.C. app.2404)에 의하면, 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인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을 축소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음. 즉 잠재적인 수령국가의 정치적 지위 또는 정치적 안정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보조 유지, 국제적 협정 또는 양해사항과의 협조 유지, 군사적으로 중요 기술의 보호 차원 등임.

* 6절 외교정책상의 통제(Section 6, Foreign Policy Controls; 50 U.S.C. app.2405)에 의하면, 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외교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을 축소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음.

- 6절 (j)항 : 국무성이 국제 테러리즘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진 국가들의 리스트 작성함.

- 6절 (k)항 : 형법상 통제를 받는 특정 장비의 수출을 제한함.

- 6절 (l)항 : 이중용도(dual use) 상품 및 기술 리스트에 의거하여 수출을 제한함.

- 6절 (m)항 : 외국 정부 또는 집단이 화학 또는 생물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및 전달 능력을 획득하는데 직접적이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 및 기술 리스트에 의거하여 수출을 제한함.

* 11A절 다자간 수출통제 규정의 위반시 제재 규정(Section 11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Violations; 50 U.S.C. app.2410a)에 의하면, 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미국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받는 것을 2-5년간 금지함.

- i) 특정 국가의 안보상 수출규제가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ii) 이러한 위반이 잠수함 및 對잠수함전, 탄도 및 요격미사일 기술, 전략폭격기, 지휘·통제·통신·정보, 및 기타 주요 기술에 있어 소련과 동유럽 진영의 군사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그렇지만 제재 대상인 개인과의 계약이 미국의 군사운영상 필요사항에 부합될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제재가 요청되지 않을 수 있음.

* 11B절 미사일 확산 통제 규정의 위반시 제재 규정(Section 11B, Missile Proliferation Control Violations; 50 U.S.C. app.2410b)에 의하면,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72, 73절과 유사하게, 미사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상업상 거래에 참여한 미국 시민과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승인함.

위 조항에서는 MTCR 부속서에 명시된 장비 및 기술의 수출 내지 이전에 참여한 경우, 또는 수출 및 이전하려고 공모하거나 그 행위를 촉진시키는 과정에 참여한 미국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함.

- 제재의 규모와 정도는 수출된 장비 또는 기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됨. 최악의 경우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 2년간 미국 군수품리스트상의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취소됨.

- 위 조항에서는 MTCR 지지국이 아닌 국가에서 미사일의 디자인, 개발 및 생산에 기여하는 형태로 MTCR 장비 내지 기술의 수출 내지 이전에 참여한 경우, 또는 이를 수출 및 이전하려고 공모하거나 그 행위를 촉진시키는 과정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함.

* 11C절 생화학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항(Section 11C, Chemical & Biological Weapons Proliferations Sanctions; 50 U.S.C. app.2410c)에 의하면,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81절과 유사하게, 미국 정부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품을 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또는 획득하는데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정부조달 및 수입을 거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

7) 1945년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 위 법은 미국의 수출입은행을 설립하고 동 은행이 미국과 외국간의 수출입 및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를 금융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 2절 (b)(1)(B)항(Section 2(b)(1)(B), 12 U.S.C. 635(b)(1)(B))에 의하면, 수출입 은행을 통한 미국의 차관(loan) 프로그램에 관한 관리 정책을 일반적으로 명시함.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국제테러리즘(여기에 한 국가가 테러리즘을 박멸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포함), 핵 확산, 환경 보호 및 인권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진전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비금융적 또는 비상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용 대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2절 (b)(4)항(Section 2(b)(4), 12 U.S.C. 635(b)(4))에 의하면, 다음 사항을 국무 장관이 결정하여 의회와 수출입은행 이사진에 통보함으로써 제재가 가해짐.

i) IAEA 핵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국가가 1977년 10월 26일 이후 이러한 안전조치를 크게 위반, 축소 또는 종결한 경우,

ii) 민간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미국과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1977년 10월 26일 이후 협정에 관련된 보증이나 다른 조치들을 위반, 축소 또는 종결한 경우.

iii) 1977년 10월 26일 이후 핵폭발 장치를 폭발한 국가로서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

iv) 1994년 6월 29일 이후 다른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하여금 핵폭발 장치를 획득하거나 또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특정한 핵물질을 획득하도록 지원 내지 부추기는 국가

v) 1996년 9월 23일 이후 다른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하여금 핵폭발 장치를 획득하거나 또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특정한 핵물질을 획득하도록 지원 내지 부추기는 개인 등.

이러한 결정이 개인에 관련되어 취해진 경우, 미 국무장관은 그 개인의 활동을 축소내지 정지시키기 위해 그 개인의 소속국가와 상의할 것이 요청되어짐.

* 2절 (b)(12)항(Section 2(b)(12), 12 U.S.C. 635(b)(12))에 의하면, 미 대통령이 다음 사항을 수출입은행에 통지할 것이 요구됨. 즉 러시아연방 정부나 군이 중국에 SS-N-22 미사일시스템을 이전 또는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이전이 미국의 안보에 주요하며 즉각적인 위협으로 나타난다고 판단될 경우임. 이러한 통지를 받자마자, 수출입 은행의 경영진은 러시아연방의 정부나 군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되어 요청되어진 신용대부(credit)의 지급 보증, 신용대부의 제공 및 연장 등을 승인하지 않게됨.

8) 1961년 외국지원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 위 법에 의해 미국 정부가 개발원조, 경제지원 금융지원, 다자간 지원프로그램, 구소련 공화국에 대한 지원, 군사적 지원, 국제 군사 교육 및 훈련, 평화유지활동, 반테러주의 및 다양한 지역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포함하여 해외지원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게됨.

* 307(c)절의 국제기구의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의 적절한 참여를 보류하는 조항(Section 370(c),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Proportionate Share for Certain Progra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2 U.S.C. 2227)에 의하면, 국제기구 또는 프로그램에 미국이 지불하는 해외원조가 특정 국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을 규정함.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IAEA에서의 활동은 예외로 함.

- 위 규정에 따라, 해외원조의 제한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버마,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이란, 쿠바,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및 위 법에 명시된 공산국가들임.

* 498A(b)절 독립국가연합 정부에 대한 지원 기준(Section 498A(b), Criteria for Assistance to Governments of the Independent States; 22 U.S.C. 2295a(b))에 의하면, 구소련의 독립국

가 연합국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시에는 이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지 말 것을 규정함.

- 구소련에 의해 서명된 군비통제 의무조항을 이행하는데 실패함
- MTCR의 지침 등에 일치하지 않게 미사일 또는 미사일 기술을 타국에 이전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

* 620(y)절 제공하는 원조에 대한 금지 조항(Section 620(Y), Prohibitions Against Furnishing Assistance; 22 U.S.C. 2370)에 의하면, 쿠바에 핵연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지원 내지 신용대부를 제공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 원조를 제한하며, 다른 법에 의거한 지원도 제한함.

* 620A절 국제 테러리즘 지원 국가에 대한 원조의 금지 조항(Section 620A, Prohibition on Assistance to Governments Supporting International Terrorism; 22 U.S.C. 2371)에 의하면, 미 국무장관이 국제테러리즘의 지원자로 규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외 원조, 식량지원, 평화유지 기금의 제공, 그리고 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진행되어온 지원들을 금지함.

* 620E절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의 규제(Section 620E, Assistance to Parkistan; 22 U.S.C. 2371)에 의하면, 그동안 미국의 대파키스탄 원조는 인접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점령으로 인해 야기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화됨.

그러나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폭발장치를 실험한 이후,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102절의 요구사항에 의해 이들 국가에 대해 제재가 가해짐. 이어서 미 의회는 이러한 제재에 대해 미 대통령이 판단하여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함.

* 620G절 테러리스트 국가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의 금지 조항(Section 620G, Prohibition on Assistance to Countries that Aid Terrorist States; 22 U.S.C. 2377)에 의하면, 이 법의 620A(22 U.S.C. 2370)절 규정에 따라 미 국무장관에 의해 테러리스트 국가명단에 등재된 정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어떠한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도 미 대통령이 모든 해외 원조를 보류하도록 요구함. 만약 미 대통령이 이러한 원조의 제공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제재의 부과를 철회할 수 있음.

* 620H절 테러리스트 국가에 치사율이 높은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의 금지 조항(Section 620H, Prohibition on Assistance to Countries that Provide Lethal Military Equipment to Terrorist States; 22 U.S.C. 2378)에 의하면, 미 국무장관에 의해 국제테러리즘의 지원자 명단에 등재된 국가에 치사율이 높은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미 대통령이 모든 해외원조의 제공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9) 2002년 케네스 루덴 해외활동, 수출금융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지출법 (Kenneth M. Ludden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2002)

해외활동지출법은 매년 회기년도 초에 다양한 해외원조, 군사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을 승인함.

* “Title I,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에서는, 해당 년도의 수출입 은행의 기금이 핵무기 비보유국가로의 핵 장비, 연료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경비지출, 계약 및 실행 등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

* 544절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에 치사율이 높은 군사장비를 수출하는 외국정부에

대한 지원의 금지 조항(Section 544, Prohibition on Assistance to Foreign Governments That Export Lethal Military Equipment to Countries Supporting International Terrorism)에 의하면, 미 국무장관이 수출관리법 6절(j)항에 따라 테러리스트 정부로 파악한 국가에 대해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외국정부에 대해서 원조를 금지함.

10) 국제 긴급 경제 위임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203절 권한의 승인 조항(Section 203, Grants of Authorities; 50 U.S.C. 1702)에 의하면, 미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의 선포에 따라 예외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권한이 부여됨. 미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선포한 이후에,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음.

- 외국환 거래, 신용차관 이전 및 지급, 현금 및 증권의 이전 등을 조사, 규제, 금지함.
-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자산에 관련되어 구체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

이 규정에 의해, 미 대통령은 만료된 수출관리법(EAA)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중동 평화 과정을 붕괴시키는 거래를 금지시켜줌.

11) 1999년 북한 위협감소법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위 법에 의거하여, 미국이 관여한 국제협정 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협정들이 발효되는 것을 금지함.

위 법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 특정 핵 물품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발급하며, 이전 또는 재이전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함. 만약 위 물품의 수출 또는 이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미 대통령은 북한이 다음과 같이 핵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음.

- i) IAEA측의 사찰시 협력함.
- ii) IAEA 안전협정을 준수함.
- iii)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협력틀 하에 따른 조항들을 준수함.
- iv) 비핵지대화(Denuclearization)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이행함.
- v) 우라늄 농축 또는 이를 개발하는 수단들을 획득하지 않음.
- vi)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음.

12) 1978년 핵 비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위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으로 핵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과 사용에 대해 좀더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정책을 적극 추구하게 됨.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의 국제제재를 수립할 것을 명시함.

- i)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틀의 수립을 증대함.
 - ii) 미국 정부에 핵 비확산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핵연료와 원자로(reactors)의 수출 허가를 부여함.
 - iii) 핵 비확산과정에서 공동의 국제 협력노력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함.
 - iv) 관련된 수출통제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함.
- 위 법에 따라, 핵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핵 수출 허가를 승인, 보류, 무효화 및 개정 절차를 수립하는 규정들을 공표하게 됨.

13) 1994년 핵 확산 방지법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위 법은 핵확산에 대해 증대하는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법을 갱신하기 위해 제정됨.

* 821절 확산에 기여하는 수출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해 조달상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 (Section 821, Imposition of Procurement Sanction on Persons Engaging in Export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Proliferation; 22 U.S.C. 6301)에 의하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 대통령이 결정한 경우 해당되는 미국 시민 또는 외국시민에 대해 미국 정부의 조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

- 개인이 명백하게 물품 또는 기술의 수출을 통해 i)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특수한 핵물질 획득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거나, ii) 핵폭발장치를 사용, 개발, 생산, 저장 또는 획득하는데 기여함.

- 만약 위 해당 개인이 제재를 받는 행위를 중단하였으며, 향후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미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고한다면, 이로부터 12개월후 위 제재는 종결됨.

* 823절 국제금융기구의 역할(Section 823,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22 U.S.C. 6302)에 의하면, 미 재무장관은 국제금융기구내 미국측 집행이사들로 하여금 핵무기 비보유국가에 의해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특수한 핵 물질의 획득, 또는 핵폭발장치의 개발, 저장, 이용 등을 증대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발언하거나 투표할 것을 지시하도록 됨.

* 824절 금융지원의 제공을 통해 핵확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함(Section 824, Prohibition on Assisting Nuclear Prolifera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Financing; 22 U.S.C. 6303)에 의하면, 금융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개인들이 금융지원을 통해 핵확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미 대통령은 만약 위 조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재를 가할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속한 외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됨.